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참가선수 공기총 보관해제(알림)

1. 관련 근거

-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 나. 대한사격연맹-2820(24. 9. 1.)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참가선수 공기총 보관해제 신청

2. 위와 관련, 각 시도경찰청장은 아래와 같이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공기총에 대해 보관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회 기간 : '24. 9. 4.(수) ~ 9. 11.(수)
- 나. 대회 장소 : 청주종합사격장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 다. 해제 기간 : '24. 9. 2.(월) ~ 9. 12.(목)
- 라. 해제 대상 : 경기용 공기총 1,696정(공기소총 780정, 공기권총 916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3. 행정 사항

가. 각 시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범죄예방질서과장)은

- 1) 대회 참가·연습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기 운반하는 사례 없도록 관리
- 2) 사격선수가 별도 보관해제 신청을 통해 자가보관 중인 총기는 보관해제 불요

나. 충북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은

- 1) 대회장소 현장 점검, 대회 참가신청자와 실제 참가자 대조 및 이상 여부 점검
- 2)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또는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발견 시 본청 보고

다. 대한사격연맹회장은

- 1) 관할 경찰서(허가관서)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 해제 기간 중 개인보관(코치·감독이 관리하는 숙소에 한함)하고, 보관해제 종료일 18시까지 원 보관장소에 재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회 참가·연습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기 운반하는 사례 없도록 관리
- 2) 보관해제된 총기는 한시적으로 개인보관을 허용하나, 사로 내 경기·훈련시간 외에는 안전기를 부착하여 연지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안전기 미부착,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장소 외 총기 운반, 보관해제된 총기의 오·남용사고 발생 등 보관 해제 조건 위반 시 즉시 보관해제된 총기 전량을 재보관하고 한시적 개인보관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공기총 보관해제 현황. 끝.

경 찰 청 징



수신자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장, 부산광역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광주광역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경기도북부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충청북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충청남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전라남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경상북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경상남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범죄예방대응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범죄예방질서과장)

경사 김한성 경정 양희승 범죄예방정책 전결 2024. 9. 2.
과장 임성순

협조자

시행 범죄예방정책과-5914 (2024. 9. 2.) 접수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02-3150-1362 팩스번호 02-1 / ckimhs34@police.go.kr / 비공개(6)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